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8864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 판 경 과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886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17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가합2399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1762 판결

판결선고 2011. 1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망 B와 관련된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망 B와 관련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을 당시에는 요양급여와 관련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에 응소한 후에야 2009. 7. 10.자 준비서면의 제출을 통하여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의 공제를 주장함으로써 그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 당시에는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해당 채권은 소멸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에서 위 요양급여 해당 금액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망 B에 대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망 C, D, E, F, G와 관련된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그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금전의 지급 등 어떠한 급부를 한 경우, 급부를 수령한 자는 그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급부를 제공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를 수령한 자는 그 급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처럼 권한 없는 자가 변제를 받았더라도 진정한 채권자가 그 변제수령의 효과를 승인하거나 추인하여 급부를 제공한 자가 진정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망인들의 모든 상속인들과 사이에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망인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상속인들과 사이에 피고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망인들의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는 피고의 유족급여 전액을 기초로 하여 잔여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구상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위 합의와의 관련상 원고로서는 유족급여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의 구상청구에 응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전제로 망인들의 상속인들과 보험금의 지급범위에 관한 합의를 하고 다시 위 합의를 전제로 피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함으로써 망인들의 상속인들 전부와의 관계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들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 피고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망인들의 상속인 중 배우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실제로는 그 배우자의 상속분을 넘어 다른 상속인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까지 구상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후 배우자 아닌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와 그에 따른 변제수령의 효과를 승인하거나 추인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으로 위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를 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위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소멸한다거나 그 행사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능환대법관 민일영주심 대법관 이인복